

서산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 3 조(청문)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의한 청문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

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 6 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 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조의 규정에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8 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서산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 9 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부과기준

<별표1>

(5조 관련)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 후)
1.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법 제15조 제5항)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객석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가족탕·한증막)	1,000	2,000	3,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터키탕·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중 객실이 30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2) 여관 및 여인숙업	1,000	2,000	3,000

마.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00	2,500	3,000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포장용기 재사용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사.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2,500	3,000
2.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 제2항).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나. 다량 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3.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4조 제3항).			
	300	500	1,0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산 군 수 (인)		

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수납날자도장		

영수필통지서

(서산군청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서산군수 귀하		
수납날자도장		

영수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의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자도장		취급자인

380mm × 180mm
(인쇄용지 (특급) 34g/㎡)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19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서 산 군 수 인

210MM × 297MM(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납 부 의 무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주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		⑦ 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 산 군 수 인

210MM × 297MM(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소 :

성명 : 귀하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액	비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 산 군 수 인

210MM × 297MM(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간			⑤ 납부통지서 번호	
	⑥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금액	
	⑧ 과태료 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 산 군 수 인

210MM × 297MM(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발신 서 산 군 수 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 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에	④ 고지일자		⑤ 과 태 료 금 액
	⑥ 부과기관		⑦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2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 번호	②통지서 번호	③과태료 통지일	납부기한		⑥금액	납 부 의 무 자		⑩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비 고
			④당초	⑤독촉		⑦성명	⑨주 소		⑪이의제기일	⑫법원통보일	

368㎜ × 257㎜ 인쇄용지 특급 34g/㎡